

의안번호	2203225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4. 10. 4.
추계번호	24G31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교육시설,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2025년 209.2억원, 2029년 1475.7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989.1억원(연평균 1,19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139.8억원(연평균 2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5억원(연평균 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최근 5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22.7억원(연평균 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전공대학 명칭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52.5억원(연평균 1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최근 2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1.5억원(연평균 0.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사업시행 결과 취득할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자

료의 부재로 세수감소 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

- 위기지역 내에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0.01억원(연평균 0.00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166.4억원(연평균 55.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91.3억원(연평균 3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28.2억원(연평균 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5,265억원(연평균 1,0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기숙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42조제1항)	-25.2	-26.4	-27.8	-29.4	-31.0	-139.8	-28.0
실험·실습용 항공기와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42조제2항)	-1.0	-1.0	-1.0	-1.0	-1.0	-5.0	-1.0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43조 제3항)		추	계	곤	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44조 제1항)	-4.8	-4.7	-4.5	-4.4	-4.3	-22.7	-4.5
전공대학 명칭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44조 제2항)	-10.5	-10.5	-10.5	-10.5	-10.5	-52.5	-10.5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44조 제4항)		추	계	곤	란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47조의4제3항)	-0.3	-0.3	-0.3	-0.3	-0.3	-1.5	-0.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4조의2)		추	계	곤	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5조의3)	-0.002	-0.002	-0.002	-0.002	-0.002	-0.01	-0.002
대도시 밖 본점 이전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9조제1항·제2항)	-48.2	-55.1	-63.1	-72.5	-83.3	-322.2	-64.4
대도시 밖 공장 이전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안 제80조제1항)	-30.4	-30.4	-30.4	-30.4	-30.4	-152.0	-30.4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안 제83조)	-3.8	-4.6	-5.5	-6.6	-7.9	-28.2	-5.6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안 제85조의2)	-85	-1,283	-1,291	-1,299	-1,307	-5,265	-1,053
계	-209.2	-1,416.0	-1,434.1	-1,454.1	-1,475.7	-5,989.1	-1,197.8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2조제1항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학교 등의 기숙사 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2	안 제42조제2항 (실습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항공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3	안 제43조제3항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4	안 제44조제1항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5	안 제44조제2항 (전공대학 명칭사용 평생교육시설 대한 감면)	○ 전공대학 명칭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6	안 제44조제4항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7	안 제47조의4제3항 (지진안전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8	안 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9	안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 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10	안 제79조제1항·제2항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11	안 제80조제1항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법인이 공장을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12	안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13	안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사업용 부동산: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9.12.31. - 국가 등 무상 귀속될 부동산: (현행) 2024.12.31. → (개정안) 2029.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42조제1항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2	안 제42조제2항 (실습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	
3	안 제43조 제3항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X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 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4	안 제44조 제1항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5	안 제44조 제2항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6	안 제44조 제4항 (공공직업교육훈련시설에 대한 감면)	X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 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7	안 제47조의4제3항 (지진안전 건축물에 대한 감면)	○	
8	안 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X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추계 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9	안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0	안 제79조제1항·제2항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11	안 제80조제1항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12	안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13	안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안 제42조제1항) 기숙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최근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취득세 및 주민세) 최근 5년(2018~2022년) 연평균 감면액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재산세) 2022년 감면실적이 최근 3년(2020~2022년) 건당 감면액의 연평균증가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
- (안 제42조제2항)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최근 5년(2018~2022년) 연평균 감면액 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안 제43조제3항) 평생교육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최근 5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안 제44조제1항) 평생교육시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취득세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재산세의 경우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와 감면액 추정액을 기초로 추계
 - (취득세)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의 연평균액(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재산세) 2020년 감면을 조정(100%→50%) 이후 감면건수가 감소추세이므로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 증감률($\Delta 19.0\%$)을
과 연평균 건당 감면액(1백만원)을 적용하여 추계

- (안 제44조제2항)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이 취득한 부동산
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2
년간의 연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2021년 제도 시행 후 2개 연도(2021, 2022년)에 한해서만 감면실적이 집계되
었으므로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안 제44조제4항)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제도 시행(2021년) 이후 최근 2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
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시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안 제47조의4제3항)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
한 취득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최
근 최근 2년(2021~2022년)간의 취득세 감면 연평균액(0.3억원)이 향후에
도 유지된다고 가정

-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은 2020년 12월말 신설

- (안 제74조의2제1항및제3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
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은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
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곤란함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취득하거나, 사업 시행 결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한 정보가 필요하나 자료가 부재함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동 조항 신설(2021.12.28.)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음

- (안 제75조의3제1항)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최근 3년(2020~2022년)의 연평균 감면액 2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20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평균 감면액이 20만원 수준
- (안 제79조제1항 및 제1항, 안 제80조 제1항)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등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평균증가율에 따라 향후 증가한다고 가정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2020~2022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최근 3년(2020~2022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법인의 공장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2020~2022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안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시장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시장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향후 증가한다고 가정
- (안 제85조의2제1항)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지방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감면 실적의 증감 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3년(2020~2022년)의 연평균 감면액 1,10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2020~2022년)의 재산세 감면액 증감률(4.3%)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안 제42조제1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를 감면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주민세 사업소분) 100%

- －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 감면율 적용

- (감면실적) 기숙사 등에 대한 최근 5년(2018~2022년) 지방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2] 기숙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18~’22)
취득세	11.6	16.9	7.7	17.1	0.6	10.8
주민세	0.1	0.2	0.1	0.6	0.2	0.2
재산세	13.9	10.0	11.6	12.3	10.9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취득세) 최근 5년(2018~2022년) 연평균 감면액(10.8억원)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주민세) 최근 5년(2018~2022년) 연평균 감면액(0.2억원)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재산세) 2022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3년(2020~2022년) 건당 감면액의 연평균증가율(9.1%)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민간 사업시행자에 위탁하여 기숙사를 건설·운영하다가 협약기간의 만료로

기숙사의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감면액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음

- 다만, 건당 감면액의 경우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건당 감면액의 연평균증가율에 따라 재산세 감면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

[표 3] 기숙사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 추이: 2020~2022년

		2020	2021	2022	연평균증가율(%) (‘20~’22)
재산세	감면액(억원)	11.6	12.3	10.9	-
	건수(건)	123	123	97	-
	건당 감면액(만원)	941	1,002	1,120	9.1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재산세 감면액 추정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재산세	10.9	11.9	12.9	14.1	15.4	16.8	18.3	20.0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 25.2억원, 2029년 27.8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39.8억원(연평균 2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42조제1항)	소계	-25.2	-26.4	-27.8	-29.4	-31.0	-139.8	-28.0
	취득세	-10.8	-10.8	-10.8	-10.8	-10.8	-54.0	-10.8
	주민세	-0.2	-0.2	-0.2	-0.2	-0.2	-1.2	-0.2
	재산세	-14.1	-15.4	-16.8	-18.3	-20.0	-84.6	-16.9

나. 실험·실습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안 제42조제2항)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항공기 및 선박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
- 재산세 감면 대상: 항공기와 선박

□ (감면실적) 실험·실습용 항공기 등에 대한 최근 5년(2018~2022년) 지방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6] 실험·실습용 항공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18~’22)
감면액	1.4	1.1	1.0	0.8	0.6	1.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항공기와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최근 5년(2018~2022년) 연평균 감면액 1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항공기와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 1억원, 2029년 1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원(연평균 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1.0	-1.0	-1.0	-1.0	-1.0	-5.0	-1.0

다. 평생교육단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43조제3항)

(1) 제도개요

- 평생교육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 부동산 취득일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2)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에 따라 평생교육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최근 5년간 평생교육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적용기한이 5년 연장되더라도 예상되는 세수효과가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표 8] 평생교육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2018~2022년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 (만원)	감면건수 (건)	감면액 (만원)	감면건수 (건)
2018	—	—	—	—
2019	—	—	—	—
2020	—	—	—	—
2021	—	—	—	—
2022	—	—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라.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44조제1항)

(1) 제도개요

□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
-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는 50% 감면, 재산세는 취득일 이후 5년간 50% 감면

(2) 감면실적 및 추계방법

□ (감면실적) 최근 5년간 평생교육시설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취득세는 2018년 16건·4억원(건당 2,400만원)에서 2020년 감면을 조정 이후 2020년 12건·6억원(건당 4,900만원), 2022년 10건·2억원(건당 2,300만원)으로 감면건수와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함
- 재산세는 2018년 1,319건·21억원(건당 2백만원)에서 2020년 감면을 조정 이후 2020년 276건·2억원(건당 1백만원), 2022년 181건·2억원(건당 90만원)으로 감면건수 및 감면액이 감소하는 추세임

[표 9]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2018~2022년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2018	4	16	24	21	1,319	2
2019	8	8	97	16	1,023	2
2020	6	12	49	2	276	1
2021	6	12	49	2	190	1
2022	2	10	23	2	181	0.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추계방법: 취득세) 취득세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준(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취득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의 연 평균액(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2019년까지 취득세는 100% 감면하며, 2020년 이후 50% 감면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4억원)·2019년(8억원) 감면실적은 50% 감면율을 가정한 감면실적으로 환산 (2018년 2억원, 2019년 4억원)하여 적용

[표 10] 취득세 감면실적: 2018~2022년

(단위 : 억원)

	2018 (조정감면실적)	2019 (조정감면실적)	2020	2021	2022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	2	4	6	6	2	4

주: 2018년, 2019년 조정감면실적 2억원·4억원은 2018년·2019년 감면실적×감면율 5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추계방법: 재산세) 재산세는 감면건수와 감면액 추정액을 기초로 추계

- (감면건수)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소율(△19.0%)이 향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

- 2020년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받으므로 2025년~2029년 전망치에서 최근 5년간('18~'22년)간 평균취득건수(12건)를 차감

[표 11] 감면건수 현황 및 추정: 2020~2029년

(단위: 건, %)

	'20	'21	'22	연평균 감소율	'23	'24	'25	'26	'27	'28	'29
감면건수(전체)	276	190	181	19.0	147	119	96	78	63	51	41
	실적치				전망치						
20년 이후 취득분 5년간 감면에 따른 제외 분	.	.	.	.	.	.	12	12	12	12	1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건당 감면액) 재산세 건당 감면실적은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이므로 최근 3년 평균액(1백만원)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취득세 감면액 평균치, 재산세 감면건수 및 건당 감면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표 12]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추정: 2025~2029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A, 억원)		4	4	4	4	4	20	4
재산세	감면액(B=a×b, 억원)	0.8	0.7	0.5	0.4	0.3	2.7	0.5
	감면건수(a, 건)	84	66	51	39	29	201	40
	건당 감면액(b, 백만원)	1	1	1	1	1	5	1
합 계(A+B, 억원)		4.8	4.7	4.5	4.4	4.3	22.7	4.5

(3) 추계결과

-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22.7억원(연평균 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안 제44조 제1항)	-4.8	-4.7	-4.5	-4.4	-4.3	-22.7	-4.5
- 취득세	-4	-4	-4	-4	-4	-20	-4
- 재산세	-0.8	-0.7	-0.5	-0.4	-0.3	-2.7	-0.5

마.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44조제2항)

(1) 제도 개요

-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 2020년 12월 말 신설되어 2021년 시행
 -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므로 감면율은 85%가 적용됨

(2) 감면실적 및 추계방법

- (감면실적) 최근 2년간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취득세는 2021년 2건·6억원, 2022년 1건·5억원
 - 재산세는 2021년 117건·4억원(건당 4백만원), 2022년 131건·5억원(건당 4백만원)

[표 14]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2021~2022년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2021	-	-	-	-	-	-
2022	-	-	-	-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추계방법: 취득세) 취득세는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수준(5.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제도 시행 후 2개 연도에 한해서만 감면실적이 집계되었으므로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추계방법 : 재산세) 재산세는 최근 2년간의 감면건수 및 감면액의 연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제도 시행 후 2개 연도에 한해서만 감면실적이 집계되었으므로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감면건수) 최근 2년 평균: 124건
 - (감면액) 최근 2년 평균: 4백만원
- 취득세 감면액 평균치, 재산세 감면건수 및 건당 감면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표 15]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추정: 2025~2029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취득세 감면액(A, 억원)		5.5	5.5	5.5	5.5	5.5
재산세	감면액(B=a×b, 억원)	5	5	5	5	5
	감면건수(a, 건)	124	124	124	124	124
	건당 감면액(b, 백만원)	4	4	4	4	4
합 계(A+B, 억원)		10.5	10.5	10.5	10.5	10.5

(3) 추계결과

-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52.5억원(연평균 1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44조 제2항)	-10.5	-10.5	-10.5	-10.5	-10.5	-52.5	-10.5
- 취득세	-5.5	-5.5	-5.5	-5.5	-5.5	-27.5	-5.5
- 재산세	-5	-5	-5	-5	-5	-25	-5

바.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44조제4항)

(1) 제도 개요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특별제한법」 제44조제2항) 2020년 12월 말 신설되어 2021년 시행
 - (감면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

- 공공단체는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해당됨

(2)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제도가 시행된 2021년 이후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적용기한이 5년 연장되더라도 예상되는 세수효과가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표 17]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2021~2022년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 (만원)	감면건수 (건)	감면액 (만원)	감면건수 (건)
2021	-	-	-	-
2022	-	-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사.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안 제47조의4제3항)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를 감면
 - 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적용기간: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 (감면실적) 최근 2년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액은 2021년 0.2억원에서 2022년 0.5억원 등 2년간 총 0.7억원(연평균 0.3억원)을 나타내고 있음

[표 18] 최근 2년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누적	연평균액
취득세 감면액	0.2	0.5	0.7	0.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및 결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0.3억원, 2027년 0.3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총 5년간 총 1.5억원(연평균 0.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향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최근 최근 2년(2021~2022년)간의 취득세 감면 연평균액(0.3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표 19] 지진안전 시설물 인정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감면액 추계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	0.3	0.3	0.3	0.3	0.3	1.5	0.3

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74조의2)

(1) 제도 개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 등에 따라 사업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75% 감면

(2) 미추계 사유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취득하거나, 사업 시행 결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해당 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약정 등의 결과로 실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동 조항 신설(2021.12.28.)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없음
 - 참고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의 현황 및 계획 등은 다음과 같음

[표 2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현황 및 계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주택공급 (사업계획승인 기준)	현물보상 약정	지구지정	현물보상 약정
'21	—	—	—	—
'22	—	—	1곳, 499호	—
'23	4곳, 3,079호	—	—	—
'24	4곳, 9,810호	3곳, 1,451호	1곳, 529호	—
'25	6곳, 7,346호	5곳, 11,438호	—	—
'26	15곳, 26,992호	6곳, 7,346호	2곳, 1,160호	1곳, 499호
'27	13곳, 26,276호	15곳, 26,992호	—	1곳, 529호
'28	—	13곳, 26,276호	—	2곳, 1,160호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75조의3)

(1) 제도 개요

- 위기지역의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 기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50%)와 재산세(5년간) 50%를 감면함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최근 3년(2020~2022년)의 연평균 감면액 2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2020년 신설된 동 제도로 인한 재산세 감면액은 2020년 34만원, 2021년 14만원, 2022년 14.7만원으로 연평균 20만원 수준

(3) 추계결과

-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 0.002억원, 2029년 0.002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0.01억원(연평균 0.00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31조제6항)	-0.002	-0.002	-0.002	-0.002	-0.002	-0.01	-0.002

차. 법인의 본사·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 제1항)

(1) 감면실적

- (감면실적) 법인의 본사·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본사·주사무소 이전) 2022년 기준 취득세 27.3억원, 재산세 4.0억원, 등

록면허세 1.8억원 감면

- (취득세) 최근 3년간(2020~2022년) 본사·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3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6.2% 수준
- (재산세) 최근 3년간(2020~2022년) 본사·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3년간 연평균감면액은 3.7억원 수준
- (등록면허세) 최근 3년간(2020~2022년) 본사·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3년간 연평균감면액은 1.8억원 수준
- (공장 이전) 2022년 기준 취득세 22.4억원, 재산세 8.0억원 감면
 - (취득세) 최근 3년간(2020~2022년) 취득세 감면액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3년간 연평균감면액은 22.4억원 수준
 - (재산세) 최근 3년간(2020~2022년) 재산세 감면액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신규 취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최근 3년 연평균감면액(8.0억원)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표 22] 법인의 본사·공장 등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실적: 2020~2022년

(단위: 건, 억원, %)

			2020	2021	2022	'20~'22 연평균감면액	'20~'22 연평균증가율
본사· 주사무소 이전	취득세	감면건수	62	82	72	-	-
		감면액	20.2	22.4	27.3	-	16.2
	재산세	감면건수	372	365	433	-	-
		감면액	3.7	3.3	4.0	3.7	-
	등록면허세	감면건수	1,618	1,812	1,683	-	-
		감면액	1.7	1.9	1.8	1.8	-
공장 이전	취득세	감면건수	66	63	44	-	-
		감면액	20.3	25.4	21.6	22.4	-
	재산세	감면건수	716	744	744	-	-
		감면액	8.2	8.1	7.8	8.0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향후 법인의 본사·공장 등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방법으로 추계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2022년 감면액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평균증가율(16.2%)을 적용하여 추계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2020~2022년)의 연평균 감면실적(3.7억원)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은 최근 3년(2020~2022년)의 연평균 감면실적(1.8억원)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법인의 공장 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최근 3년(2020~2022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취득세 22.4억원, 재산세 8.0억원)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 78.6억원, 2029년 113.7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474.2억원(연평균 94.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322.2억원(연평균 6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수는 2025~2029년간 총 152.0억원(연평균 3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3] 본점 또는 공장 이전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79조제1항·제2항)	취득세	-42.7	-49.6	-57.6	-67.0	-77.8	-294.7	-58.9
	재산세	-3.7	-3.7	-3.7	-3.7	-3.7	-18.5	-3.7
	등록면허세	-1.8	-1.8	-1.8	-1.8	-1.8	-9.0	-1.8
	계	-48.2	-55.1	-63.1	-72.5	-83.3	-322.2	-64.4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80조제1항)	취득세	-22.4	-22.4	-22.4	-22.4	-22.4	-112.0	-22.4
	재산세	-8.0	-8.0	-8.0	-8.0	-8.0	-40.0	-8.0
	계	-30.4	-30.4	-30.4	-30.4	-30.4	-152.0	-30.4
합계		-78.6	-85.5	-93.5	-102.9	-113.7	-474.2	-94.8

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83조)

(1)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 (감면실적) 2022년 기준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은 3.16 억원이며, 최근 4년(2019~2022년) 연평균 증가율은 20% 수준

[표 24]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 2019~2022년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감면액	1.85	2.14	2.99	3.16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시장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최근 4년간(2019~2022년) 연평균 증가율(20%)에 따라 향후 증가한다고 가정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 3.8억원, 2029년 7.9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8.2억원(연평균 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83조)	-3.8	-4.6	-5.5	-6.6	-7.9	-28.2	-5.6

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85조의2)

(1) 제도 개요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50% 감면(적용기한: 2025년 12월31일)
 - 단,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
 -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감면(적용기한: 2025년 12월31일)
 - 단,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를 100% 감면(적용기한: 2024년 12월31일)

[표 26]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주요 내용

구분		감면율	적용기한
감면율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2025.12.31
	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시설물 등	(재산세) 100%	2024.12.31

- (감면실적) 2022년 기준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은 1,024억원(5,397건), 재산세 감면실적은 149억원(2,680건) 수준
 - 취득세 감면액의 경우 2020년 950억원에서 2021년 1,347억원으로 2020년 950억원 대비 397억원(41.8%) 증가한 후 2022년은 다시 감소하여 1,024억원을 기록
 - 재산세의 경우 2020년 137억원에서 2022년 149억원으로 연평균 4.3% 증가

[표 27]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실적: 2020~2022년
(단위: 억원, 건)

		2020	2021	2022
취득세	감면액	950	1,347	1,024
	감면건수	4,642	4,677	5,397
재산세	감면액	137	147	149
	감면건수	2,387	2,802	2,68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2) 추계방법

-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은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
 - 지방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감면 실적의 증감 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2020~2022년의 연평균 감면액 1,107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최근 3년(2020~2022년)의 재산세 감면액 증감률(4.3%)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동 제도에 따른 2022년 재산세 감면액 실적 149억원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50%,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동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 통계가 사업용 부동산과 국가 등 무상 귀속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집계되지 않음
 - 동 개정안이 부동산 구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간 연장 정도가 달라 이를 추계하기 위함
 - ☆ 사업용 부동산: 2025.12.31. → 2029.12.31., 4년 연장
 - ☆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 2024.12.31. → 2029.12.31., 5년 연장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년 85억원, 2029년 1,307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265억원(연평균 1,0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

라 지방세수는 2026~2029년간 총 4,804억원(연평균 9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지방공기업이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461억원(연평균 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2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 제85조의2)		-85	-1,283	-1,291	-1,299	-1,307	-5,265	-1,053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0	-1,107	-1,107	-1,107	-1,107	-4,428	-886
	재산세	0	-88	-92	-96	-100	-376	-75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85	-88	-92	-96	-100	-461	-9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세제분석2과	고은비	백경엽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